

기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 同僚委員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節約하고 우리의 건강하고 씩씩한 후대를 양성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條例案을 滿場一致로 통과시켜 주셔서 많은 學父母님들과 어린 새싹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우리 서울시議會가 되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長時間 敬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喆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습니다.

○專門委員 金長虎 서울特別市給食學校後援에關한 條例案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

1. 제안경위

본 조례(안)은 1995년 4월 26일 김인동, 임익근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5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사유

학교급식의 시설비는 학교설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학교설립자는 공립학교의 경우에 시·도이므로 서울특별시는 당연히 시설비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우리의 씩씩한 후예를 양성하는 차원에 지원하는 것이 학교급식법과 동법시행령의 입법정신에 합당하다.

3. 주요골자

가.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제공을 후원하기 위한 근거마련(안 제1조)

나. 학교급식 후원대상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급식을 후원한다.(안 제2호)

다. 매 회계년도 개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후원금액을 지급한다.(안 제5호)

4. 근거법령

○ 학교급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 조례 제5조제1항제7호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니나, 동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소관사항이 불분명하여 의장이 당위원회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본문 6조 부칙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바,

○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은

• 서울특별시내에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설립자는 서울특별시장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장이 후원자가 되어야 하며, 서울특별시장은 급식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매년 100억원씩 예산편성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용 입법취지는 적절한 판단이라고 사료되나,

• 학교급식후원에 관한 사항을 차치하고라도, 학교급식법 제8조에 의한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사항으로서의 교육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무로 일괄규정(지방자치법 제9조)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령으로 시교육감으로 하고, 예산회계는 교육비특별회계를 설치하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5조, 제45조, 제47조)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는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명문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되어 있어,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것은 현행법 제도상 모순이라고 사료됨.

○ 본 조례(안)의 각조를 검토한바,

• 안 제1조 목적에서 학교급식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제공을 하기 위한다고 규정하였고, 학교급식법 제5조의2의 규정내용은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하는 학교급식 후원을 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급식후원회의 구성대상인 법

(第77回-文化教育第1次)

인으로서 서울특별시가 포함이 되느냐 하는 문제로서, 서울특별시는 공립학교의 설립자이며 공법인이라는 측면에서, -협의로는 학교급식법 제5조의2 단서 조항에 의한 학교단위의 학교급식후원회 구성과 학교급식법 제8조의 경비 부담의 원칙으로 설립자와 학교급식후원회를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후원회의 구성대상에서 포함 안된다는 설과 -광의로는 공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급식후원회의 구성대상에 포함된다는 설이 있다고 사료됨. -또한 광의로 해석하여 학교급식후원회의 구성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학교급식을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또는 학교급식후원회에 구성될 의사가 있는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고 사료됨.

안 제2조에서 급식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학교급식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1995년 5월 10일 현재 지정현황은 국민학교 471개교 792,361명의 학생수 중 248개교 340,469명의 학생수이며, 1995년말까지 국민학교 480개교 중 333개교가 지정될 전망이다. 또한, 예산현황을 보면 공립 국민학교 전체를 지정할 경우, 총경비는 1조 4,625억원이 소요되나,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설립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는 358억 정도이고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는 1조 4,267억원이며, 설립자가 부담할 경비중에도 시설·설비설치비 265억원을 제외하면 매년 예산에 94억원을 계상하면 되는것으로 사료됨.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계	산 출 기 초
계	1,462,410,085	
연 료 비	2,424,625	17원×792,361명×180일
식 품 비	1,426,624,480	1,000원×792,361명×180일
인 건 비	6,420,480	4명×480개교×220일×15,200원
시설·설비유지비	480,000	1,000천원×480개교
시설·설비설치비	26,460,000	180,000천원×(480개교-333개교)

- 설립자 부담 : 35,785,105천원
- 학부모 부담 : 1,426,624,980천원

안 제4조에서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학교급식후원금은 학교급식시설이 구역내 대상학교에서 급식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매년 100억원으로 하되, 예산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사료됨.

○ 따라서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조례제정의 배경, 학교급식법 제5조의 해석과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執行部의 意見を 陳하겠습니까.

서울市 企劃管理室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本 條例案에 대해서 意見を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